



2026. 1. 15.(목)
의회운영위원회실

제28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목차

연번	안건명	쪽수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박혜숙 의원 등 2인 동의

2. 제안이유

-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의회 및 부천시 공무원을 폭넓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포상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표창 대상을 의회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
-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5조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부천시의회 뿐 아니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한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여 포상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나, 다만 지방의회의 발전이나 의정활동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 표창할 수 있음.
- 광명·군포·시흥·안산·안양 등 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포상 대상을 시의회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두어 제도적 유연성과 입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부천시의회”를 “의회 및 부천시”로, “의정발전”을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패)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부천시의회</u> 소속 공무원으로 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u>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u> <호 신설 2022.4.13.>	5. <u>의회 및 부천시</u> ----- ----- <u>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u> ----- -----
<u><신 설></u>	6. <u>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참고 1**현행 조례****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2024.12.23 조례 제4163호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5.06>

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5.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호 신설 2022.4.13.>

참고 2**타 의회 현행 조례****광명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2928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2025.07.11 조례 제2282호

제5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5.1.7.>

1. 표창장(패)

가.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라. 그 밖에 봉사 등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흥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094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숭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2020.11.18 조례 제2426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2024.11.05 조례 제3680호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졸업예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